

1.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진찰을 통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재 처리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특별진찰 결과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7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매우 높다”를 “높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u>매우 높다</u> 는 소견이 있는 질병	4. ----- ----- ----- <u>높다</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